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5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7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0. 27.
판 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8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등(취득세 2,38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원) 2,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5

가. [redacted]구 B 제10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 원고 아들 D 앞으로 2014.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9가단1301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4.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0. 10. 피고에게 과세표준 68,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0,000원, 지방교육세 204,000원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로서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5

원고는 원고 남편 E에게 원고 소유인 [redacted]구 F 대지 39㎡(이하 F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F 토지와 교환하면서 임의로 그 소유 명의를 D 앞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서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D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9. 9. 24. 화해가 성립한 것이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혹,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소유권이 없던 사람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본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받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4.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D이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D이 그 내용대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5

으로 추정된다고 볼 것인 점, 이와 달리 D이 아니라 원고가 본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원상회복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2017. 10.경에야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 D에게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당시까지 D은 E에 대한 대여금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E, D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3)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 외의 원인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8호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 및 단서 제4호에 의하면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특정한 방법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D에게 대가를 지급한 바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

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25

판사 [redacted]